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826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7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
나. 제출일 : 2025년 5월 26일
다. 회부일 : 2025년 5월 29일
라. 상정일 :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25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평생교육국장 정진우)

가. 제안이유
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5. 1. 21.)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기존 시행계획 수립을 예방대책 수립으로 변경하고,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제1호).

- 지역위원회가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 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 (안 제5조제3항)
-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 없음.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.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.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 없음.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(2025.4.10. ~ 4.30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'개정안')은 상위법인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 개정 및 시행(2025.1.21. 일부개정, 2025.5.22. 시행)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였음.

〈법 주요 개정 내용〉

① 시·도 교육감의 책무 강화

- '시·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' 수립·시행 (법 제6조제3항)
-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공포 (법 제6조제4항)

② 시·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책무 강화

- '학교폭력 예방대책'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 포함 (법 제10조제1항)
-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(법 제10조제2항)

※ 본 개정안의 내용

-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사항 변경, 의무 신설, 위원 연임제한 등
 - 학교폭력 예방대책(교육감의 시행계획 포함) 수립 심의 (안 제5조제2항제1호)
 -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심의 등 (안 제5조제2항제2호·제3호)
 -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예방대책 제출 (안 제5조제3항)
 - 위원의 연임제한(두 차례) 명시 (안 제6조제4항)
- 용어 정비
 - 조제목 신설 (안 제1조 조제목)
 - 자구 수정 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제5항, 안 제6조제1항·제4항, 안 제8조제1항)
 - 띄어쓰기 (안 제2조제2호·제6호·제7호, 안 제8조제1항·제2항)
 - 조문 삭제 (조례 제11조 삭제)

가.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사항 변경, 의무 신설, 위원 연임제한 등

1) 심의 사항 변경, 의무 신설 등 (안 제5조 관련)

- 안 제5조제2항 각 호와 안 제5조제3항은 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(이하 '지역위원회')의 기능 변경, 의무 신설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안 제5조제5항은 용어를 정비(자구 수정)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</p> <p><신 설></p> <p>3.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 -- 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</p> <p>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</p>

<p>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.</p>	<p>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없는 한 -----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--	---

○ 개정된 법은 지역위원회가 매년 수립하는 ‘학교폭력 예방대책’에 시행계획(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매년 수립·시행하는 ‘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’)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(법 제10조제1항) 하고 있으며,

- 지역위원회에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(법 제10조제2항제3항) 하도록 하고,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감 및 경찰청장에게 자료를 요청(법 제10조제4항)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등의 상담·치료 및 교육 기관을 지정(법 제10조제5항)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)

-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한다.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. 21.>
-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1. 21.>
-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 1. 21.>

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·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, 2025. 1. 21.>

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·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. 26., 2025. 1. 21.>

⑥ (생략)

○ 안 제5조제2항 각 호, 안 제5조제3항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의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위원회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.

○ 다만, 안 제5조제5항은 학교폭력 발생 시 지역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교육감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협조에 관한 내용으로, 용어 정비(자구 수정)를 통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,

- 근거조항(적용조항) 오류(제5조제3항(×) → 제5조제4항(○)), 법령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‘일본어 투 표현’(특별한 사유가 “없는 한”) 사용 등으로 개정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(4) 없는 한 → 없으면

• ‘없는 한’은 앞에 오는 말이 뒤의 상태에 대해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것이다. ‘없으면’이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.

예

제5조(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~④ (생략)

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→

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5항)

출처 : 법제처(2023)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(제10판), 186p

〈전문위원실 수정의견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<u>제5조제3항</u> 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<u>없으면</u> 그 요청에 <u>협조할 수 있다</u> 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없는 한</u> ----- <u>협조하도록 노력하여</u> <u>야 한다</u> .	⑤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<u>제5조제4항</u> 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<u>없으면</u> 그 요청에 <u>협조하도록 노력</u> 하여야 한다.

- 또한 법 제10조 제1·2·3항은 강행 조항으로 지역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, 본 개정안을 지역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아닌 “심의 사항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, 기능을 열거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2) 위원의 연임제한 명시 등 (안 제6조 관련)

- 안 제6조제1항은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, 안 제6조 제4항은 지역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(두 차례 연임) 규정의 신설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, 잔여임기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.	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 ----- ----- <u>이내의 위원으</u>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의 임기는 2년(당연직은	④ -----(당연직 위원

재임기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(생략)

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 ---. ----- 전임위원의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- 안 제6조제1항, 안 제6조제4항의 용어 정비(자구 수정)는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바로잡아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.
- 안 제6조제4항은 지역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(두 차례 연임)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 서울시 조례¹⁾(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)에 따라 지역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보이나,
 - 상위법령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)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(2년) 규정 외 연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, 조례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① ~ ④ (생략)

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~ ⑧ (생략)

1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제3항에서 같은 위원회 위원이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용어 정비 등

1) 조문 삭제 (조례 제11조 관련)

- 개정안은 조례 제11조(시행규칙)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, 법제처 해석 (조례에 해당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, 「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16p)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2) 기타 용어 정비

- 개정안은 조제목 신설(안 제1조 조제목), 자구 수정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8조제1항), 띄어쓰기(안 제2조제2호·제6호·제7호, 안 제8조제1항·제2항) 등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※ 안 제1조 조제목 신설 : “제1조” → “제1조(목적)”

※ 안 제1조 : “관한 필요한” → “필요한”

※ 안 제2조 : “뜻한” → “뜻은”

※ 안 제2조제2호 :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 →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

※ 안 제2조제6호 :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” →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”,

“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” → “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”

※ 안 제2조제7호 :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 →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

- ※ 안 제8조제1항 :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” 규정에 의한 →
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” 규정에 따른,
 “관련 프로그램” →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,
 “연계할 수 있다.” → “연계하여야 한다.”
- ※ 안 제8조제2항 :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1항” →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”

- 조례의 용어·문장·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안 제8조제1항은 단체의 장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단체장)에게 ‘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’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관련 청소년 시설 등으로 연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<u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</u>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<u>관련 프로그램</u> 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<u>연계할 수 있다.</u>	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<u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</u> - ----- ----- ----- 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</u> <u>로그램</u> ----- <u>연계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, 해당 법 제15조제2항은 ‘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’을

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,

- 본 개정안에서 상위법령의 지원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, 근거 없이 단체의 장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단체장)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효력이 없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아닌지, 본 개정안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(“지원이 필요한”)을 명시 또는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
※ 「대법원 2007.12.13. 선고 2006추52 판결」

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, (중략)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.

- 또한 현행 조례의 제8조제1항 관련 검토보고* 의견(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 존재함,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 필요) 등을 고려할 때,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주민에게만 효력이 미치고,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, 통합지원체계 중 필수연계기관의 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, 조례의 효력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,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(중략)

〈 안 제8조에 대한 서울시(법무담당관) 검토의견 〉

학교 밖에 대한 규율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, 해당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.
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사항이며, 더욱이, 관련 단체장 및 학교 밖 지원센터에 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.

- ※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, 제15조(지원센터와의 연계) 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,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단체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- ※ 「청소년복지 지원법,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,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,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※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, 제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필수연계기관”이라 한다)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 1.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 2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
 3. 「청소년기본법,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
 4. 「지방자치법,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 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, 제4조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
 6. 「초·중등교육법, 제2조에 따른 학교
 7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제13조에 따른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
 8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,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9. 「지역보건법, 제10조에 따른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 10.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,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
 11.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,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
 1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,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 13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,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(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〈전문위원실 수정의견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<u>관련 프로그램</u> 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<u>연계</u> 할 수 있다.	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</u> ----- ----- <u>연계</u> 하여야 한다.	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<u>관련 프로그램</u> 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<u>연계</u> 할 수 있다.

-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(시장 제출)은 평생교육국과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의 입법심의 절차(사전 협의, 조례·규칙심의회 등)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, 개정사항 미반영(안 제5조제5항 근거조항 오류)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(안 제8조제1항), 지양해야 할 일본어 투 표현(안 제5조제5항)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음.
- 이에 평생교육국은 향후 안건 제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, 철저한 사전 검토와 엄격한 입법 심의가 필요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거조항 오류를 정정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문의 근거조항 수정 및 용어 정비(안 제5조제5항).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(안 제8조제1항)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27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거조항 오류를 정정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문의 근거조항 수정 및 용어 정비(안 제5조제5항).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(안 제8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5항 중 “제5조제3항”을 “제5조제4항”으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을 “관련 프로그램”으로, “연계하여야 한다”를 “연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〈 수정안 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·치료·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 --- 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</p> <p>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10조제5항에 따</p>	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.

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 ---. ---

----- 전임위원의 -
-----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---

----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-----
--- 연계하여야 한다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-----

----- 관련 프로그램-----
--- 연계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관한 필요한”
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(목적)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뜻한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초·중
등교육법」 제2조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
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”를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12조”로, “단체 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”를 “단체 또는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「학교 밖 청소년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3호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시행계획”을 “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”
으로, “사항”을 “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
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

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5조제3항”을 “제5조제4항”으로, “협조할 수 있다”를 “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의 위원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”를 “(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임 위원회”를 “전임위원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”을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</u> 이 조례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<u>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뜻</u>한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학교"란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<u>제2조</u>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6. "청소년시설 등"이란 「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<u>제12조</u>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<u>제29조</u>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 <p>7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</u>은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<u>제2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「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<u>제12조</u>----- 단체 또는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<u>제29조</u>----- -----.</p> <p>7. -----</p>

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

<신설>

3. (생략)

<신설>

---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-----
-----.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- 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 --- 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

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

③ (생략)

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

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제5조제4항 -----

-----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
----- 이내의 위원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(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 -----
----- 전임위원의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-----

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.

② 청소년시설 등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② ----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-----
-----.

<삭 제>